

서울특별시

우 100-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전화 (02)731-6660 /전송731-6956 처리부
 서: 세무행정과(시민과3층 연금매점옆) 과장 위정복 담당사무관 권오도 담당 최한철

문서번호 세정 13400-1049

시행일자 1998.10

(경유)

수신 내부결재

참조



| | | |
|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취급 | | 시 장 |
| 보존 | 년 | 김은각 |
| 급장 | 전 결 | |
| 관장 | 이명복 | 세정담당사무관 법제심사담당 권오도 사무관심사관 |
| 기안 | 위정복 | |

제목 시세감면조례개정안 입법예고

1. 행정자치부 세제 13400-205(98.9.21)와 관련입니다.

2. 위 문서의 관련하여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미리 시민에게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별첨과 같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.

첨부 입법예고(안) 1부 끝



(제 2 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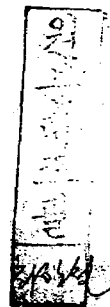
수신 공보담당관

제목 시세감면조례개정안 입법예고문 시보게재 의뢰

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미리 시민에게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별첨과 같이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자 하오니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입법예고(안) 1부 끝

세 무 행 정 과 장



입법예고(안)

서울특별시공고 제1998-53호

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
| 발령일자 | 1998. 10. 10 | 제 6의 호 |
| 발령처 | 서울특별시 | 서울특별시공고 |
| 발령인 | 이재근 | 서울특별시 |

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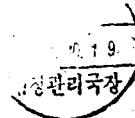
1.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2.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관리국 세무행정과(전화 :731-6260, 666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1998년 10월 일

서울특별시장

가. 개정 이유

- (1)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임대(공동)주택 감면대상을 종전 60제곱미터 이하에서 85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확대하고,
(공동임대주택, 임대주택, 임대주택)
- (2)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와 주차시설에 대한 감면 규정의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.



나. 주요내용

(1)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대상 확대

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대상을 현행 전용면적 60㎡ 이하만 100% 면제에서 전용면적 60㎡ 초과 85㎡이하의 경우도 취득세·등록세 25%를 감면토록 확대

(2) 주차장시설 감면 제외대상 등을 명확히 규정



기존주차장을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감면제의 됨을 명시하고, 감면받은 주차장을 5년 이내 매각하는 경우를 감면세액 추징요건으로 추가함

다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8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(참조: 세무행정과장,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, 전화 731-6260, 6660 FAX 731-6956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여부와 그 사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주소, 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명), 전화번호

